

의안번호	2124912
의 퇴 인	노웅래 의원
회 답 일	2023.10.26.
추 계 번호	23B4393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억 2,400만원(연평균 1억 8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정부의 책무 (안 제4조제1항)	462	—	—	462	—	924	185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1항 (정부의 책무)	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짐 <u>7의2.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·분석</u>	의무규정
2	안 제15조제1항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<u>7의2.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·분석</u>	의무규정
3	안 제125조제8항(작업환경측정) 신설	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근로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고령근로자의 신체·감각·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실태와 건강영향을 조사(이하 “고령자 작업환경측정”이라 한다)하도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75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4항) <u>6의2.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5항) <u>제125조제7항(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u>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제1항(정부의 책무)	○	—
2	안 제15조제1항(안전보건관리책임자)	—	(미대상)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125조제8항(작업환경측정) 신설	—	(미대상)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, 관련 행정 업무는 현재 고용노동부 자체 행정력으로 이행 가능
4	안 제175조(과태료)	—	(미대상) 개정안의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재정수입의 증가는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·분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실태조사 비용을 토대로 산출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에 대해 추계
 -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은 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” 사례를 준용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되(2025년과 2028년 실시), 2021년 기준 사업비(4억 6,200만원)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(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)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이행 상황, 예방활동, 위험노출정도, 정신건강 등 산업안전보건실태를 조사
 - 근거법률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제1항제7호
 - 수행기관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- 소요재정: 2021년 기준 4억 6,200만원
 - 조사주기: 3년(최근 조사는 2021년에 시행)
- ※ 자료: 고용노동부
- 추계결과, 정부가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·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 동안 총 9억 2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462	—	—	462	—	924	185

주: 1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
2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으며,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